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여 성 가 족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3. 특히, 금년에는 법 개정예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시설이 많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규 기관·시설*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기관·시설 현황 : 붙임 참조(신고의무 10쪽, 취업제한 12쪽)

붙임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가족지원과장, 권익정책과장, 권익지원과장, 권익보호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국립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전문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이러닝과장), 교육부장관(교육기회보장과장),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장관(특수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혁신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기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서관정책기획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기반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 경찰청장(범죄예방정책과장),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주무관 **오성미** 사무관 **조린**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금순** 전결 2018. 4. 24.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과-875 (2018. 4. 24.) 접수 미래인재기반과-1065 (2018.04.25.)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번호 02-)2100-6409 팩스번호 02-)2075-4776 / dptlfm1@korea.kr / 대국민 공개